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공 고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예규(재민 2004-7) 제8조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합니다.

- 공고할 사항 -

1. 분배계획안인가결정(덧붙임). 끝.

2017. 4. 27.

재판장 판사 이환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0 민사부

결 정

사 건 2010가합 1604 증권관련집단소송

분배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분배계획안을 인가한다.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분배관리인이 2017. 4. 7. 별지 기재와 같이 분배계획안을 제출하였는바, 위 분배계획안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분배의 기준과 방법

각 구성원에 대한 분배의 기준과 방법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화해금을 전체 손해액에서 해당 구성원의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바, 이러한 분배의 기준과 방법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고 인정된다.

2.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공제항목과 그 금액

가. 소송비용

분배관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 대리인이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으

로 합계 18,178,750원을 지출한 사실이 소명된다.

나. 변호사 보수

위 사건은 1,867,729,941원에 화해가 성립되어 구성원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 점, 원고 대표당사자와 원고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계약서상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 "착수금은 0원으로 하고, 성공보수는 판결, 화해, 조정성립 등으로 인정되는 추가 만기상환금 또는 손해배상금 중 1심에서 성공시 15%(부가가치세 별도)"로 약정한 점, 본 소송은 2010. 1. 7. 제기되어 2017. 2. 15. 화해허가결정이 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점, 분배계획안에서 정한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구성원 중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보수를 화해금액 1,867,729,941원의 15%(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308,175,440원(= 1,867,729,941원 × 0.165)으로 정한 것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고 인정된다.

3. 나머지 사항

그 밖에 총원의 범위와 채권의 총액,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권리실행금액 및 분배할 금액, 권리신고의 기간·장소 및 방법, 권리의 확인방법, 분배금의 수령기간, 수령장소 및 수령방법 등 별지 기재 분배계획안의 나머지 사항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분배관리인이 제출한 별지 기재 분배계획안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고 인정되므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4. 26.

재판장 판사 이 환 승

판사 안 은 진

판사 도 민 호

별지

분배계획안

사 건 2010가합1604 증권관련집단소송
원고(대표당사자) 주식회사 큐에스아이
피 고 로얄뱅크 오브 캐나다

1. 총원의 범위 및 채권 총액

가. 총원의 범위

한화증권 주식회사가 2008. 4. 25.경 발행한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제 10호(원금비보장형)(이하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이라 함)’을 매수하였다가 만기에 상환 받은 자.

나. 채권 총액(화해금 총액)

1,867,729,941원

2.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권리실행금액 및 분배할 금액

가.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1,897,729,941원

나. 권리실행금액 및 분배할 금액

1) 권리실행금액

권리실행금액은 1,897,729,941원(화해금 1,867,729,941원 + 소송비용 및 분배비용 30,000,000원)이며, 위 금액은 전액 현금으로 임의 지급받아 법원보관금규칙에 따라 법원보관금으로 공탁되어 있음.

2) 분배할 금액

분배할 금액은 화해금 1,867,729,941원에서 현금으로 지급될 변호사보수 금 308,175,440원(계산내역은 아래 3. 나.와 같음)을 공제한 금 1,559,554,501원임. 소송비용 및 분배비용조로 지급받은 30,000,000원은 분배하지 아니하고 소송비용 및 분배비용으로 사용하며 잔여금이 있을 경우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 55조의 잔여금과 같이 처리함.

3) 권리실행금액에 대한 이자의 귀속 및 처분

권리실행금액 1,897,729,941원에 대하여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분배관리인에게 귀속시켜 분배관리인에 대한 보수 및 분배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여금이 있을 경우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55조의 잔여금과 같이 처리함.

3.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공제항목과 그 금액

가. 소송비용 및 분배비용

1) 소송비용

금 18,178,750원(첨부 1. 소송비용 내역)

2) 분배비용

약 17,115,200원¹⁾ [= 분배관리인 보수²⁾ 10,000,000원 + 분배계획안 개별 통지
우편 비용 약 984,200원(266명 × 3,700원) + 권리확인 개별 통지 우편 비용
약 984,200원(266명 × 3,700원) + 현금 계좌 이체 수수료 약 133,500원(266명
× 500원) +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약 13,300원(266명 × 50원) + 공인회계사
의 보수³⁾ 약 5,000,000원)]

3) 소송비용 및 분배비용 지급방법

변호사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과 분배비용은 화해금에서 공제하지 아
니하고 피고가 소송비용 및 분배비용으로 지급한 금 30,000,000원 및 권리실
행금액 1,897,729,941원에 대하여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에서 지급함. 만약 실제 소송비용과 분배비용이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이를 원고 소송대리인이자 분배관리인인 법무법인 한우리가 부담하고, 만
약 이에 미치지 못하여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55조

1) 분배비용은 분배절차의 진행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2) 분배관리인의 보수는 분배관리인을 돕는 실무진들의 보수까지 포함된 것으로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정한 분배
관리인의 업무인 분배계획안 작성, 266명의 구성원의 권리신고에 대한 각 확인, 분배보고서, 분배종료보고서 각
작성 뿐 아니라 구성원들이 분배계획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구성원들에게 분배계획안을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하는 작업 등에 소요될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음.

3)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8조 제1항 제2호에 기재된 공인회계사의 확인서 작성을 위해 공인회계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말함.

의 잔여금 처리 시에 잔여금과 같이 처리하기로 함.

나. 변호사보수

1) 보수액

- 308,175,440⁴⁾원(1,867,729,941원 × 0.165)

- 이 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제소자들과 원고대리인간에 체결된 사건위임 계약서에 따르면 소송수행에 따른 착수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되, 화해, 조정, 판결 등 어떠한 사유로든 소외 한화증권 또는 피고로부터 추가 만기상환원리금(소외 한화증권이 2009. 4. 지급한 만기상환금을 넘어서는 추가 만기상환원리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경우를 성공으로 보고 추가 만기상환원리금(또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1심 제기 후 판결, 화해, 합의 등으로 추가 만기상환금(또는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추가 만기상환금 또는 손해배상금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5%(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바, 본안의 1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1,867,729,941원으로 화해가 되었으므로, 위 금원의 16.5%(15%에 부가세 1.5%를 더한 비율)가 변호사보수에 해당함.

2) 지급방법

현금으로 지급함.

4) 소수점 이하는 버림

4. 분배의 기준과 방법

- 각 구성원에 대한 지급금액은 피고가 지급한 화해금 1,867,729,941원에서 변호사보수를 공제한 금액에 원고가 주장하는 전체 손해액에서 해당 구성원의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함.
- 각 구성원의 손해액은 각 구성원이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이 만기 수익금지급조건을 충족시키게 될 경우 상환 받았을 금액(투자원금의 122%)과 실제로 상환 받은 금액(투자원금의 약 74.6%)과의 차액으로서 첨부 2. 손해액 및 분배금액 계산표의 ‘손해액’란 기재와 같음.⁵⁾
- 결국 각 구성원이 지급받을 현금의 액수는 [(화해금 1,867,729,941원 - 변호사보수 308,175,440원) × 해당구성원의 손해액 / 전체 구성원의 손해액]으로서 첨부 2. 손해액 및 분배금액 계산표의 ‘분배할 금액’란 기재와 같음.

5. 권리신고의 기간, 장소 및 방법

가. 권리신고의 기간

법원의 분배계획안 인가결정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 간(2개월 안에 권리신고서가 분배관리인에게 도달하여야 함)

나. 권리신고의 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431호 법무법인 한누리(서초동, G-Five

5) 2016. 12. 21.자 화해허가신청서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과 동일함.

Central Plaza) (우편번호 : 06601)

다. 권리신고의 방법

첨부 4. 안내문을 참고하여 첨부 3. 권리신고서 양식에 따라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권리신고의 장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우편 제출함.

6. 권리의 확인방법

가. 권리의 확인방법

권리의 확인은 이 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기2294호)에서 소외 한화증권이 2012. 3. 23.자로 제출한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추가연계증권의 매수자 인적사항, 매수 및 상환 내역에 의하여 확인함을 원칙으로 함.

나. 권리확인 통지 일시 및 방법

권리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각 구성원과 피고에게 통지함.

다. 권리확인에 대한 이의 방법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권리신고인 또는 피고는 권리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에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음.

7. 분배금의 수령기간, 수령장소 및 수령방법

가. 분배금의 수령기간

권리확인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모두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간

나. 분배금의 수령장소 및 방법

사건담임자인 법원사무관이 권리신고서에 기재한 금융기관 계좌번호로 현금 계좌이체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주소변경의 신고

분배계획 고지 이후 주소가 변경된 구성원은 분배관리인에게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권리신고서

사 건 2010가합1604 증권관련집단소송
원고(대표당사자) 주식회사 큐에스아이
피 고 로얄뱅크 오브 캐나다

위 사건에 관하여 본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권리신고를 합니다.

다 음

1. 권리신고인의 인적사항

가. 권리신고인의 성명 또는 상호 ()

나. 권리신고인의 주소

1) 주소 ()

2) 전자우편 주소 ()

다. 전화번호(법인의 경우 담당자 성명 표시) ()

라. 휴대전화번호⁶⁾ ()

6) SMS(문자메세지)를 통해 분배절차 진행상황이 통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주소,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권리신고의 내용

손해액 ()원

※ 첨부 안내문 1. 항을 참조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분배금을 지급받기 위한 금융기관 명,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본인명의 계좌를 원칙으로 하며,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경우 신분증을 소지하여 권리신고 장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431호 법무법인 한누리(서초동, G-Five Central Plaza) (우편번호: 06601)}를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권리확인통지 방법(통지받고 싶은 방법을 택일하여 O 표시)

주소로 우편 송달	전자우편 통지

2017. . .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분배관리인 귀중

안 내 문

귀하께서 분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배계획안 인가결정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분배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화해금을 분배받지 못하실 수 있는바, 권리신고서의 세부사항 작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권리신고서 2.항에 기재할 손해액

귀하께서 권리신고서 2.항의 “손해액 ()원” 부분 괄호 안에 기재하실 손해액은 분배계획안 첨부 2. 손해액 및 분배금액 계산표의 “손해액” 란에 쓰인 금액입니다. 위 손해액은 귀하께서 이 사건 추가연계증권이 만기 수익금지급조건을 충족시키게 될 경우 상환 받았을 금액(투자원금의 122%)과 실제로 상환 받은 금액(투자원금의 약 74.6%)의 차액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실제 분배받게 되는 분배금은 위 손해액과 그 수액이 다른데(분배받으실 금액은 위 손해액의 110% 상당의 화해금에서 변호사보수를 공제한 금액에 귀하의 손해액이 전체 구성원의 손해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⁷⁾으로 위 손해액 및 분배금액 계산표의 “분배할 금액”란에 쓰인 금액입니다), 실제로 지급 받을 분배금이 아닌 위 손해액을 권리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한 이유는, 지급받을 분배금이 각 구성원의 손해액이 전체 구성원의 손해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연동하여 산정하도록 화해허가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2. 분배금을 지급받기 위한 금융기관 명, 계좌번호

7) (총 화해금 1,867,729,941원 - 변호사보수 308,175,440원) × 귀하의 손해액 / 전체구성원의 손해액. 변호사보수는 이 사건 제소자들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서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약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은 화해금의 16.5%(15% 및 부가가치세 1.5%)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권리신고서에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타인명의계좌로 분배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권리신고 장소인 법무법인 한누리{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431호(서초동, G-Five Central Plaza) (전화번호: 02-537-9500)}로 직접 방문하셔서 수령계좌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